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제정일: 2004. 4. 20.

제1창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<u>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</u>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7.><개정 2021.05.31>
- 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<u>가톨릭꽃동네대학교</u>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5.12.17.><개정 2021.05.31>
- 제3조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133, 대학 내에 둔다. <개정 2012.04.19.><개정 2015.12.17.> 제4조(업무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 - 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 - 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 - 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 - 5. 지적재산권 ·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 - 6.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· 훈련
 - 7.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
 - 8. 국내·외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수행 및 지원 업무(저소득 개발국가 구호 활동 및 연구사업 등) <개정 2015.12.17.>
 - 9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<신설 2017.09.13.>
 - 10. 사회복지시설(노인, 장애인, 청소년, 아동 등) 설치 및 수탁, 운영에 관한 업무 <신설 2017.09.13.>
 - 11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

제2장 재산 및 회계

- 제5조(운영재원)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6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.
- 제6조(수입)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
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
- 2.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익금
- 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- 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- 5. 이자수입
- 6.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·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- 7. 기타 산학협력에 의한 수입금
- 제7조(지출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 - 1. 산학협력단의 관리 · 운영비
 - 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 - 3. 대학의 시설 · 운영 지원비
 - 4. 제6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
 - 5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
 - 6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 - 7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 - 8.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- 제8조(회계관리) ①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 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.
 - ②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- 제9조(회계기관)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 - ②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,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총장은 단 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학 회계부서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출방법)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.
 - ②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추진비,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
- 제11조(회계처리 등) ①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 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.
 - ②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.
 -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(이하 "회계처리규칙"이라 한다)에 따른다. <개정 2012.04.19.>
- 제12조(사업연도)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인 매년 3월 1일부터

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- 제13조(결산) ①단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총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 · 확정하여 야 한다.
 - ③결산 시 작정하여야 하는 서류 및 부속명세서는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.
 - ④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서를 5년 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결산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3장 조직 및 운영

- 제14조(단장) ①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둔다.
 - ②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,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.
 - ③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.
 - ④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.
 - ⑤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15조(부단장) ①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 1인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다.
 -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부단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16조(감사) 총장은 대학교 소속의 교직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한다. <전문개정 2018.06.05.>
- 제17조(하부조직) 산학협력단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, 필요에 따라 이외의 사업부서 및 기구를 둘 수 있다.
- 제18조(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) ①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 - ③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4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

- 제19조(구성) ①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이 된다.
 - ②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, 임명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당연직위원은 산학협력단장, 기획관리처장, 교무입학처장,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9.02.26>
 -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8.06.05>
- ⑤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. 제20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
 - 2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- 4. 정관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21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제22조(의사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3조(위원회의 소집)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-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상금

- 제24조(보상금의 지급) ①제6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원의 성격, 수입금액의 정도,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 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한다.
 - ③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 -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25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6조(해산) ①산학협력단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
 - ②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.
- 제27조(공고의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.
- 제28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수행중인 제4조의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③(시행일) 이 정관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④(시행일) 이 정관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⑤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⑥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